대전역 지하상가 공예품전시판매장 무상사용허가 동의안

의 안 번 호 89

제출년월일: 2007. 1.12.

제 출 자:대전광역시장

1. 제안이유

지역공예제품의 홍보와 판로지원을 위하여 대전역 지하상가에 설치운영중인 『대전역지하상가 공예품전시판매장』의 사용허가건에 대하여 지역공예산업의 육성발전과 지역특화문화상품 개발장려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대전공예협동조합에 무상사용 허가코자 의회동의를 구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목 적: 지역공예상품의 홍보 및 판로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

나. 위 치 : 대전광역시 동구 중동 317 (대전역 지하상가 내)

다. 규 모: 10개점포 (99.84 m² /약 30평)

라. 사용기간 : 3년

마. 운 영 자 : 대전공예협동조합

3. 관련법령

가.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 (민속공예산업의 지원등) 제1항제2호 및 제3호

나.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7조(사용료 면제 또는 감면) 제4항제4호

대전역 지하상가 공예품전시판매장 운영

- 전통공예 기술의 계승·발전 및 자립기반이 열악한 공예산업의 판로를 확대하기 위하여 상설 공예품전시판매장 운영
- 지역 공예상품의 지속적인 홍보와 판매촉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

□ 전시장 개요

- 목 적 : 지역공예상품의 홍보 및 판로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
- 위 치 : 대전광역시 동구 중동 317 (대전역 지하상가 내)
- 규 모: 10개점포 (99.84m² /약 30평)
- 운영자 : 대전공예협동조합

□ 그동안 운영현황

《전시판매장 설치연혁》

- '83. 8.20 : '88 올림픽 상품개발 대비 상설전시장 마련의 필요성에 의거 전시판매장 확보
- '88. 3.30 : 내무부 지침(지방특산품 개발육성 촉진지침)에 의거 확장설치
- '05. 12. : 공예품전시판매장 리모델링공사 (32평─80평)

《전시판매장 사용허가 현황》

- '84. 2. 5 : 전시장 7평 무상 사용허가 대 전 시 장
- '89. 9. 28 : 전시장 25평(18평 확장) 무상사용허가 대전직할시장
- '89.10. 25 : 전시장 32평(7평 확장) 무상사용허가 대전직할시장
- '01. 1. 1~12.31 : 전시장 32평 무상사용허가 대전광역시장
- '05. 1. 1~12.31 : 전시장 32평 무상사용허가 대전광역시장
- '06. 1. 1~12.31 : 전시장 30평 무상사용허가 대전광역시장

※ 무상사용허가 근거

-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 (민속공예산업의 지원등) 제1항제2호 및 제3호
- 대전광역시 관광공예품 및 산업디자인 개발육성에 관한 조례 제12조(시장은 우수업체 및 기능보유자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다음을 지원할 수 있다)

□ 전시판매장 운영 필요성

- 공예품은 산업으로서 뿐만 아니라 민속전통기술의 보존 계승 차원에서 보호육성이 필요함
- 또한 지방자치시대에 향토성이 담긴 공예품을 개발하여 관광상품으로서 지역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함
- 그러나 우리 대전의 공예산업은 지극히 영세하여 자립 기반이 극히 취약한 실정임
- 이에 공예산업의 자립기반을 닦는데 도움을 주고 공예인의 사기를 진작시켜 공예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고자 전시판매장을 무상사용토록 하려는 것임.

관 계 법 령

《지 원》

-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45조(민속공예산업의 지원등)
 - ① 중소기업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지역안의 민속공예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.
 - 1. 경영안정을 위한 소요자금
 - 2. 제품의 판로확보
 - 3. 제품개발·품질향상 및 개발된 제품의 상품화

《계약방법》

-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(사용・수익허가) 제2항
 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·수익의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*수의계약*의 방법에 의하여 허가할 수 있다.
-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(사용・수익허가의 방법) 제2항제8호
 - ② 법 제20조 제2항 제1호에서 "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"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 - 8. 당해 시·도, 시·군 및 자치구를 대표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을 공동으로 생산·전시 또는 판매하는데 필요한 재산을 관련단체 또는 법인에게 사용·수익허가하는 경우

《사용료》

-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(사용료 면제 또는 감면) 제1항제4호
 -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 등의 사용·수익을 허가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.
 - 4. 천재·지변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기간 사용·수익허가를 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의 동의가 있을 때
-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7조(사용료 면제) 제4항제4호
 - ④ 법 제24조 제1항 제4호에서 "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"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 - 4. 제 13조 제2항 제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당해 *지방의회의 동의를* 얻은 경우